

총 무 처

총리지시 5호

1970. 4. 9.

수신 수신처 참조

제목 각급 임용후보자의 임용지침

각급 공개경쟁채용시험 및 3급공개경쟁승진시험 합격자로서 임용후보자 명부에 등재된 임용후보자의 추천 및 임용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지침을 시달하니 공개경쟁채용시험 및 공개경쟁승진시험 합격자의 임용에 반전을 기할것.

첨부 각급 임용후보자의 임용지침 1부 끝.

국 무 총 리

수신처: 가 - (1. 2. 6. 8) 나 (1)

26/

각급 임용후보자의 임용지침

각급 공개경쟁채용 및 3급 공개경쟁승진
시험에 합격한 임용후보자의 임용은
공무원 임용령 제 10조의 규정에 의거
에 우선하여 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다음 요령에 의한다.

1. 3급 임용후보자의 임용

가. 결원보충을 위한 신규임용은 공개경쟁채용
및 공개경쟁승진 시험에 합격한 임용후보
자의 임용, 특별승진(특별채용 포함)에
의한 임용의 순서에 의하여 결원보충의
임용비율은 공개경쟁채용 및 공개경쟁승진

합격자의 임용과, 특별승진에 의한 임용

, 의 비율로 한다.

4. 공개경쟁채용시험 및 공개경쟁승진시험에 합

격한 임용후보자의 추천은 추천요구 기관

의 요구순위에 따라 임용후보자 명부의

등재순으로 임용추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

되, 각 기관에서 추천 요구가 없을 경

우에는 직급별 결원과 임용후보자 명부

에 등재된 임용후보자 수를 대비하여 그

임용후보자의 희망부처별 등재순위와

기본명부의 성적순위에 의거하여 정부

조직법상의 기관 서열에 따라 할당한

다.

다. 공개경쟁채용시험에 합격한 임용후보자를
본인의 동의를 얻어 이의 전직시험을 거쳐
추천할 경우에는 임용후보자의 등재순위에
불구하고 특별추천한다.

라. 추천요구기관에서 임용예정직위 또는 담당
업무의 성격상 임용후보자의 학력, 경력등
에 관하여 특수요건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그 요건에 해당하는 자를 임용후보자 등재
순위에 따라 선발하여 추천한다.

마. 각 기관에서 임용후보자를 지명하여 특별
면접을 요구할 경우에는 당해 임용후보자를
등재순위에 불구하고 추천한다.
바. 공무원으로 재직중인 임용후보자를 소속

기관에서 세수증명서를 접수하여 주민요구

를 할 경우에는 특별주천한다.

2. 4·5급 임용후보자의 임용.

가.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부터, 4·5급
임용후보자의 추천요구가 있을 때나, 인사
통계보고 규칙에 의거 보고되는 각
부처의 직급별 결원을 파악하여 할당추천할
경우에는 임용후보자 명부에 등재된 임
용후보자 수와 추천할 인원을 대비하여
임용후보자의 희망부처별 등재순위와 기본
명부의 성적순위에 의거하여 3배수 범위
내에서 추천한다. 이 경우에 할당추천은
정부조직법상의 정부기관 순위에 의한다.

- 나. 임용후보자가 전직을 동의하는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명추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임용후보자의 동재
순위에 불구하고 특별추천한다.
- 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임용후보자를 임용함에
있어 근무지역 또는 담당업무의 성격상
임용후보자의 학력, 경력, 거주지 등에 관
하여 특수요건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그
요건에 해당하는 자를 등재순위에 따라
선발하여 추천한다.
- 라. 중앙행정 기관에서 임용후보자를 지명하여
특별연접을 요구할 경우에는 당해 임용후보
자를 등재순위에 불구하고 추천한다.

아. 공무원으로 재직중인 임용후보자를 소속
기관에서 재직증명서를 첨부하여 추천요구를
할 경우에는 특별추천한다. 끝.

-6-E